

「제2회 화성시 산업평화대상」 추천 및 신청 공고(안)

노동자와 사용자는 대립의 관계가 아닌 상생을 위한 협력관계로서 소통과 화합의 노사상생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「제2회 화성시 산업평화대상」 추천 및 신청을 공고합니다.

2025. 8. 26.

화 성 시 장

1. [시 상 명] 「제2회 화성시 산업평화대상」

2. [유공분야] 3개 분야(각 분야별 2개소 선정)

유공 분야	유공 내용
‘노사상생협력’	노사공동의 노력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노사상생의 성과를 이룬 자
‘노동권익신장’	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노동권익 신장에 기여한 자
‘안전한 일터 조성’	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소중히 여겨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한 자

3. [시상근거]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

4. [추천 및 신청 기간] 2025. 8. 26.[화] ~ 9. 25.[목]

5. [추천 및 신청 대상] 유공분야별 공적이 있는 관내 업력 3년 이상의 기업

- 상세 추천기준은 평가표 참고

6. [추천 및 신청 방법]

※[붙임] 추천(신청) 서식 작성 제출

: 온라인 제출: 화성시기업지원플랫폼(화성산업진흥원)홈페이지
(<https://platform.hsbiz.or.kr/business/list>)

: 이메일 제출: shhan3289@korea.kr

※ 추천기관은 3개 유공분야 모두 추천이 가능하나 유공분야별로 1개 기업 추천 가능

7. [추천권자] 읍·면·동장, 노동단체(한국노총, 민주노총 지역본부),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, 노사민정 참여 단체·기관장의 추천 외 개별 신청

8. [선정방법] 1차 심사_ 화성시청 노사협력과
2차 심사_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

9. [시상시기] 2025년 화성시 노사민정 성과공유 콘퍼런스에서 「제2회 산업
평화대상」 시상(2025. 12월 중)

10. [수상자 제공] 트로피 및 현판 수여
지원사업(「노사상생 지원사업」 신청 기회 부여)

11. [추천 및 신청 대상자 세부 기준]

○ (추천/신청 대상자) 유공분야별 공적이 있는 관내 업력 만 3년 이상
기업

수상명	유공분야	[수상대상자]
산업 평화 대상	노사상생협력 노동권익신장 안전한 일터 조성	관내 업력 만 3년이상 사업체

○ (기업규모) 대기업 · 중견기업 · 중소기업 무관 (단, 1인기업 제외)
※ 중소기업 평가 우대

○ (업 종) 무관

○ (국 적) 사업주와 · 노동자의 국적 무관 단, 사업주 또는 노동자 중
1인은 반드시 한국인이여야 함

→ 외국 또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본사가 해외에 있더라도 화성시에 지사가 있고
한국인 소속 노동자 또는 지사장이 한국인인 경우 수상 대상

※ 추천(신청) 제외 대상

- 1인기업

- 관내 업력 3년 미만의 기업

(단, 화성시에서 영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타시군으로 이전 후 화성시로 복귀한 경우에는
타시군으로 이전한 기간을 제외하고 화성시 총 소재기간이 만 3년 이상이어야 하며,

복귀일자로부터 만 2년 이상이 지난시점부터 추천 대상 포함)

- 기 산업평화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기업

※ 산업평화대상을 수상한 기업은 10년 이내에 다시 수상할 수 없음.

(단, 산업평화대상 內 유공분야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후에 재수상 가능)

- 시장 이상 표창 수여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(공적분야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)

※기관 및 단체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(공적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수상 가능)
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(완납 후 표창 추천 가능)

※ 단,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세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는 체납으로 보지 않음

-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

- 노사분규로 인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, 파업·태업·직장폐쇄 등 쟁의행위가 진행중인 기업

- 산업평화대상 피추천 기업의 사업주와 노동자 대표가

· 수사 중이거나,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

· 사형,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

·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·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·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·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·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·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·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및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성폭력·성매매 비위자는 추천 불가

· 그 밖에 사회통념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
12. [유공분야별 심사 기준]

※상세평가기준은 첨부 문서 평가표 참조

○ 1차 심사

분 야		만 점	평 가 기 준
		100	
공 통 분 야		50	화성시 소재기간(5) / 기업 규모(5) / 노동 관련 법 위반 여부(10) / 근로자 제안 제도 운영 실적(10) / 평균 근속연수(10) / 사회공헌활동 실적(10)
유 공 분 야	노사상생 협력	50	노사협의회 개최 실적(10) / 노사협의회 정기 회의 참석률(10) / 노동자의 기업경영 및 인사 복무 등 관련 근로자 제안 건수(10) / 노사 공동 교육, 워크숍 개최 횟수(10) / 상생 관련 투자 예산 비중(10)
	노동권의 신장		노동조건 보호제도 운영 현황(10) /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차별금지 제도 운영(10) / 취약노동자(비정규직 등)권익보호 정책(동일적용여부)(10) / 일 생활 균형 제도 운영 실적(운영 및 실적 존재-최근1년)(10) / 고충처리제도 및 의견 수렴 운영 실적(규정+실적)(10)
	안전한 일터 조성		최근 3년간(2022.1.~2024.12.)산재 재해율(10) /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수준(유효기간 내 인증 확인)(10) /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(10) / TBM·캠페인 등 예방활동 횟수 기준 점수 부여(10) / 근로자의 안전 관련 제안 및 개선 활동 참여 횟수(10)

○ 2차 심사

- 심사기관: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
- 심사대상: 1차 심사결과 유공분야별 상위 3개 기업
- 심사내용: 유공분야별 공적기술서 심사
- 선정기준: 1차 심사결과 + 2차 공적기술서 심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기업 선정
- 선정방법: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심의 의결

▶ 공적기술서 평가 기준

- 유공분야 별 3개 주제 중 택1
- 실천의지, *참여구조의 정례성, 제도화 여부, 지속 가능성 등 판단
 - ※ 참여구조의 정례성 : 특정 참여 시스템이나 협의체 등이 일정한 주기와 형식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구조
- 정량자료(참여율, 시행횟수 등), 정성사례(구체적 실행사례) 포함(증빙자료必)

13. [심사 결과 발표]_ 2025년 12월 초[예정] (개별통보)

14. [선정취소] (※ 현판 및 상패 회수)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
 - 증빙서류 미제출 시
- 수상자로 선정된 해에 관내 사업장을 타시군으로 이전한 경우
 - 타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「노사상생 지원사업」 신청 대상 제외
- 위 추천(신청)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이 확인된 경우

15. [추천(신청) 제출 서류]

- 추천서 또는 신청서_ [붙임] 의 신청서 참고
- 공적내용 확인서 및 기술서_ [붙임] 의 신청서 참고
- 사업자등록증(변경내역 포함)
- 법인등기부등본(주소변경내역, 지점에 관한 사항 표기)
- 증빙 서류
 - ※ 1차 심사 결과 유공분야별 상위 3개 기업에게 증빙자료 별도 요청
 - 증빙자료 미비할 경우 차순위 기업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
 - ※ 2차 심사 선정기업에 한해 ‘공적조서’ 추가 제출 (별도 요청_10월 중)

[신청서류] _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첨부 문서,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 홈페이지,
화성시기업지원플랫폼(화성산업진흥원) 홈페이지 참고

16. [문의처] 화성시청 노사협력과 ☎ 031-5189-2647

- 붙임 1. 관련 서식.
2. 심사 기준표.
3. 신청서 등 서식. 끝.